

[재]연수큰재장학재단 제12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제12회 (재)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4일

[재]연수큰재장학재단 이사장



I 신청서 접수

- 공고·신청기간: 2026. 8. 24.(월) ~ 9. 30.(수) 【37일간】 *평일 근무시간 내
 - ※ 연수큰재(다년간,고등학생) 분야: 2026. 9. 30.(수) ~ 10. 23.(금) (23일간)
- 접 수 처: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Tel.(032)749-7243
 -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5층 교육지원과(우편번호 21967)
- 접수방법: 우편(등기)접수 또는 신청인(대리인 가능) 방문접수
 - ※ 단, 초·중·고·대학교 발송 공문 접수 가능하며, 연수꿈옹원 및 연수큰재(다년간, 고등학생) 분야는 반드시 소속 학교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함.
 - 우편 접수는 마감일 9. 30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.
 - ※ 연수큰재(다년간, 고등학생) 분야는 10. 23. (금) 18:00 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우편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실방지를 위해 등기발송
 -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모두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.

II

선발안내

1 선발분야 및 지급금액

선발분야		대 상		지 급 금 액	인 원	지원 예상액	비 고	
정기 장학금	복 지	고 등 학 생		100만원	24명	24,000천원	생활비성 장학금 (중복 지원 가능)	
		대 학 생		200만원	24명	48,000천원		
		소 계			48명	72,000천원		
	특 기 _ 개 인 (예능·체육·기능)	초 등 학 생		50만원	10명	5,000천원		
		중 · 고 등 학 생		100만원	35명	35,000천원		
		대 학 생		200만원	3명	6,000천원		
		소 계			48명	46,000천원		
	특 기 _ 단 체 (예능·체육·기능)	초·중·고 등 학 생		200만원	5단체	10,000천원		
		소 계			5단체	10,000천원		
	연수꿈응원 (특성화고)	2 학 년 (신 규 선 발)		50만원	3명	1,500천원		
		3학년(취업성공시)		100만원	(27년 선 발)			
		소 계			3명	1,500천원		
	학 업 우 수	대 학 생		최대 200만원	32명	64,000천원		타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(단, 타장학금과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지원 가능)
소 계			32명	64,000천원				
연 수 큰 재 (다년간)	고 등 학 생 (3 학 년)		고3: 100만원 대: 400만원	3명	3,000천원	생활비성 장학금 (중복 지원 가능)		
				5명	20,000천원		타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 단, 타장학금과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지원 가능)	
	소 계			8명	23,000천원			
특별 장학금	연수꿈나무	연 수 유 소 년 축 구 단 · 야 구 단		단체당 300만원	2단체	6,000천원	생활비성 장학금 (중복 지원 가능)	
		소 계			2단체	6,000천원		
	설립10주년 특별장학금 (신설)	중 · 고 등 학 생		100만원	10명	10,000천원		
		대 학 생		100만원	10명	10,000천원		
		소 계			20명	20,000천원		
총 계				159명/ 7개 단체	242,500천원			

- * 7개 선발분야(복지, 특기(개인,단체), 연수꿈응원, 학업우수, 연수큰재, 특별장학금)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
- * 생활비성 장학금: 학업 및 특기 분야를 향상 시키기 위한 비용(학원비, 교재비) 용도로 사용
- * 선발인원 및 지원액은 예정사항으로, 접수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수큰재장학재단 이사회 심의로 최종결정
- * 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은 당해연도 선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학교 졸업 시까지(고등학교 1년, 대학교 최대 4년) 최대 1,700만원 지원하며, 대학교 재학 중 직전학기 장학금 수혜로 해당 장학금 50만원 이하 지원 시 생활비성 장학금 50만원 추가 지원

2 선발절차 ※ 선발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복지, 특기(개인·단체), 학업우수, 연수꿈응원, 설립 10주년 특별장학생, 연수큰재(다년간, 대학생) 분야

공고 · 접수	서류심사	선발심의	장학생 확정	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
'26 8. 24.~9. 30. (37일)	'26. 10. 1 ~ 10. 31.	'26. 11. 24. (예정)	'26. 11. 30 限	'26. 12월
선발공고 및 신청접수	자격요건 등 사전검토	선발 심의위원회 개최	재단 정기이사회 개최	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

- 연수큰재(다년간, 고등학생)분야 ※ 2026.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발표 후 접수

공고 · 접수	서류심사	면접심사 및 선발심의	장학생 확정	장학증서 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
'26 9. 30.~10. 23. (23일)	'26. 10. 26. ~ 11. 6.	'26. 11. 24. (예정) ※수능 이후	'26. 11. 30 限	'26. 12월
선발공고 및 신청접수	자격요건 등 사전검토	면접심사 및 선발 심의위원회 개최	재단 정기이사회 개최	수여식 및 장학금 지급

3 선발방법

분 야	복지, 특기_개인, 특기_단체, 연수꿈 응원, 학업우수, 설립10주년 특별 장학생	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 [붙임자료 1] 참조
공통 선발 기준	성적(석차 등급, 평균 평점, 입상 실적) 재산·소득수준(복지), 거주기간, 지자체 단체장상, 다자녀 여부를 고려하여 종합적 평가 ※ 설립10주년 특별장학생의 경우, 분야별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선발	
선발절차	서류심사 ↓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선발심의 ↓ 장학생 최종확정	<고등학교 3학년 선발절차> 서류심사 ↓ 면접심사 ↓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선발심의 ↓ 장학생 최종확정

4 선발결과

- 2026. 12월 초 개별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

Ⅲ

신청자격

① 공통 자격기준

※ ①~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 단, 연수큰재(다년간) 계속지원 장학생(대학생) 은 별도 기준 적용

① 「연수큰재장학재단 운영규정」 제6조에 해당하는 자

▶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또는 부·모(또는 보호자)의 자녀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

※ 직전학기~공고일 현재 재학생에 한함

[해당학교]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, 기술대학

[제외학교]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한 학교(전공대학, 직업전문학교 등)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설립한 외국교육기관

③ 제외대상 : 국외유학생, 휴학생, 정규학기 초과하여 재학 중인 대학생 및 졸업
유예학생

② 분야별 자격기준

① 복지 장학생

- [공 통]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(공고일 현재 가구원수 기준)의 자녀
- [고등학생] ※ 등급표기 가능 과목 해당
 - 1,2학년(5등급제 적용):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3등급 이내
 - 3학년(9등급제 적용):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5등급 이내
- [대 학 생]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.5만점 기준 3.0 이상 (12학점 이상 이수)

<참고자료> 2026년 기준중위소득

(단위: 원)

기준 중위소득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100%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

② 특기(예능·체육·기능) _ 개인 장학생

-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분야(예능·체육·기능) 전국대회¹⁾, 국제대회²⁾에서 개인분야 또는 단체분야³⁾ 5위⁴⁾ 이내 성적을 득하거나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개인분야 또는 단체분야 3위 이내 성적을 득한 자

- 1) 전국대회 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시·도 교육감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
- 2) 국제대회 :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 친선, 기술·기능 향상을 위해 각 나라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
- 3) 단체분야 : 해당 단체에서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추천받은 1명만 신청 가능
- 4) 5위 내의 성적이라 함은 시상명칭에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
(예: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일 경우 인원 관련 없이 장려상이 5위)

- 대회 세부기준

선발분야	대회 기준
체 육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대한체육회(산하 가맹경기단체를 포함)에서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문화예술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문화예술진흥원 등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기 능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
※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주최,주관하는 대회는 대회의 규모, 지속성, 참가범위, 심사절차 및 전문성 등을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대회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

③ 특기(예능·체육·기능) _ 단체 장학생

-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분야(예능·체육·기능) 전국대회¹⁾, 국제대회²⁾에서 단체분야 5위³⁾ 이내 성적을 득하거나 시·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단체분야 3위 이내 성적을 득한 초·중고등학교 및 지자체 산하기관 소속 단체 (사설단체 신청 불가)
- 특기_개인 분야로 신청한 학생이 포함된 단체는 신청 불가
- 단체 총 인원 대비 3분의 1 이상이 연수구 거주자에 한함

- 1) 전국대회 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시·도 교육감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
- 2) 국제대회 :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 간 친선, 기술·기능 향상을 위해 각 나라 학생이 참가하는 대회
- 3) 단체분야 5위 내의 성적이라 함은 시상명칭에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인식되는 순위
(예: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일 경우 인원 관련 없이 장려상이 5위)

- 대회 세부기준

선발분야	대회 기준
체 육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대한체육회(산하 가맹경기단체를 포함)에서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문화예술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문화예술진흥원 등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기 능	정부, 광역자치단체, 교육청,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주최·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 및 시·도단위 규모 대회

※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민간기관이 주최,주관하는 대회는 대회의 규모, 지속성, 참가범위, 심사절차 및 전문성 등을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당 대회로서의 적합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

④ 연수꿈응원 장학생

- [특성화 고등학생 2학년]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2등급 이내 (등급표기 가능 과목 해당) 이며,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공을 살려 취업 진로를 희망하는 우수 장학생 (학교장 추천 선발)
→ 2027년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원 추가 지급
- [특성화 고등학생 3학년] 연수꿈응원 장학생 전년도 기 선발자로, 3학년 때 취업에 성공할 경우 100만원 지급 (2027년도부터 지급)

⑤ 학업우수 장학생

- [대 학 생]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4.5만점 기준 4.2 이상 (4.3점 만점일 경우, 환산하여 제출),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
※ 2026년 1학기 휴학자는 지원 불가

⑥ 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 [붙임 자료 1] 참조

- [고등학생 3학년]
 -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6. 9월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전체 상위 10% 범위 이내에 있는 학생
 - 2027년도 1학기에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자로, 대학 입학(등록)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 (대학 미진학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지급 장학금 환수)
 - 연수큰재장학재단 및 연수구가 주관하는 멘토링, 봉사활동 및 장학생 교류 활동 등에 분기별 1회 이상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
 -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한 선발(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개최 시 면접심사 실시)
 - 지원자격을 충족한 서류심사 대상자가 최종 선발 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, 서류심사 성적평가 점수 고득점순으로 면접대상자 3배수를 선발 (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심사 합격 처리)

- [대 학 생] 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 기존 선발자로, 2026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 4.5만점 기준 3.5 이상 (4.3점 만점일 경우, 환산하여 제출)

⑦ 설립 10주년 특별장학금 분야 (2026년 한정 선발)

-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적·사회기여도·기관 추천서 내용·분야별 접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자 결정
- [중·고등학생] : 2026년 1학기 평균 성취도 B등급 이상인 자
- [대 학 생] : 2026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, 전과목의 평균성적 3.5점 (4.5점 기준) 이상인 자
- 선발분야

구분	지원가능 대상자	선발 대상 및 세부 자격	비고
1	다자녀가정자녀	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 ① 1가구에 자녀가 3명 이상일 것 ② 그 중 2명 이상이 중학교 이상 학교 (대학원 제외)에 재학 중일 것 ③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 중 1인만 지원 (1가구 내 중복지원 불가)	
2	특수학교 모범 재학생	①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과정 이상 모범학생 (재학하는 특수학교가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및 지원서 등을 종합평가) ② 학교당 1명 이내 추천	「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특수학교 재학생
3	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의 자녀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의 자녀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
4	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	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, 같은 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보호 중인 학생 ② 대학 입학(등록) 후 1개월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확인 후 장학금을 지급함	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보호사실(종료)확인서 또는 보호연장 증명서류 발급 가능한 자

IV

제출서류

※ 신청서 제출 시 공통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,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(별도 표시한 경우 사본 예외)

- 학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학교 담당교사의 원본대조필 날인하에 사본제출 가능

1 공통 제출서류

연번	제 출 서 류	발급처
1	[별지 제4호 서식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화·초상권 사용 동의서	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://www.yeonsu.go.kr/main/ 또는,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://ysjaedan.imweb.me 다운로드 후 작성
2	재학증명서	소속학교
3	주민등록초본 1통 (신청자 본인, 최근 2년 이상 주소변동사항) ※ 신청 대상자가 연수구 미거주시 연수구 거주 부 또는 모(보호자)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정부24
4	가족관계증명서 (부모기준) → 한 가정 2명 이상 지원여부 확인을 위함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정부24 단체분야 신청자는 제외

2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

- 정기장학생

<장학생 신청서 및 장학생 추천서>

연수구청 홈페이지 <https://www.yeonsu.go.kr/main/> 또는,

연수큰재장학재단 홈페이지 <https://ysjaedan.imweb.me> 다운로드 후 작성

분 야	제 출 서 류	비고
복지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성적증명서 확인(※ 고등학생 별지 제2-1호 서식) ○ 성적증명서(※ 대학생 대학교에서 발급한 서류) ○ 기초생활수급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, 중증장애인 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복지 대상자 증빙 서류 ☞ 정부24.동 행정복지센터.건강보험공단 등 발급	※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중위소득 100% 이하가정) 발급기준 2026년 1월~7월 기준 가구원 모두 제출, 미납부 가구원은 당사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

분 야	제 출 서 류	비 고
특기(예능체육기능)_ 개인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입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원본) : <u>최대 3개</u>	입상 상장등은 우선 순위등을 부여하여 최대 3개까지 제출
특기(예능체육기능)_ 단체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-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(대표자 선정 후, 신청서 및 참가자 명단 제출) ○ 입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원본) : <u>최대 3개</u> ○ 단체 소속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 (공고일 기준 3분의 1 이상 연수구민이어야 함)	입상 상장등은 우선 순위등을 부여하여 최대 3개까지 제출 ※ 학교 소속 단체가 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는 경우, 대표 학생의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며 단체 참가학생의 재학 여부는 학교 제출 공문으로 같음할 수 있음
연수꿈응원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연수꿈응원 장학생 자기계발 계획서(별지 제1-3호 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성적증명서 확인(별지 제2-1호 서식)	학교 공문으로만 신청접수
학업우수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타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 ※ 소속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시, 대체 가능 ○ 성적증명서(소속 대학교 발급 서류)	
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연수큰재 장학생 자기계발 계획서(별지 제1-2호 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성적증명서 확인(※ 고등학생 별지 제2-1호 서식) ○ 성적증명서(※ 대학생 대학교에서 발급한 서류) ○ 타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서(※ 대학생 별지 제3호 서식) ※ 소속 대학교에서 발급 가능 시, 대체 가능	(고등학생) 학교 공문으로만 신청접수 (대학생) 공통 제출서류 및 성적증명서, 타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서만 제출

※ 복지 장학생의 재산 및 소득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시, 세목별과세증명·소득금액증명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. (본인 및 부모)

— 특별장학생

분 야	제 출 서 류	비 고
연수꿈나무 [연수구유소년축구단] [연수구유소년야구단]	○ 장학생지급신청서(별도 안내예정) ○ 서약서(단체)(별도 안내예정) ○ 대표 장학생 1명의 주민등록초본	※ 별도 공문발송 예정 담당 부서(연수구청 체육청소년과) 통한 제출
10주년 특별장학생 [다자녀가정자녀]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2026년 1학기 성적 확인서류 - 중.고등학생: 별지 제2-1호 서식 및 2026년 1학기 전과목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등 - 대학생: 성적증명서(대학교 발급) ○ 신청자 외 중학교 이상 재학 중인 형제·자매 1명 이상의 재학증명서 1부	※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 ① 1가구에 자녀가 3명 이상 ② 그 중 2명 이상이 중학교 이상 학교 (대학원 제외)에 재학 중
10주년 특별장학생 [특수학교 모범재학생]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2026년 1학기 성적 확인서류 ○ 특수학교장의 공문	※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 추천서로 대체 ※ <u>특수학교 발송 공문으로만 신청 및 접수</u>
10주년 특별장학생 [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의 자녀]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<u>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</u> ○ 2026년 1학기 성적 확인서류 - 중.고등학생: 별지 제2-1호 서식 및 2026년 1학기 전과목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등 - 대학생: 성적증명서(대학교 발급)	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 무원의 자녀
10주년 특별장학생 [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]	○ 장학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○ 장학생추천서(별지 제2호서식) ○ <u>보호종료확인서, 자립준비청년 확인서,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,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, 재원증명서, 보호기간 연장 확인서 등 해당 자 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u> ○ 2026년 1학기 성적 확인서류 - 중.고등학생: 별지 제2-1호 서식 및 2026년 1학기 전과목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등 - 대학생: 성적증명서(대학교 발급) ※ (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) 대학 입학(등록) 증빙 자료 추후 제출 후 장학금 지급	

① 공통 유의사항

- 선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 가능
-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재단의 2기 봉사단에 3년간 의무가입 되며,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(장학증서 수여식, 워크숍, 봉사단 등)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-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, 선발 평가 대상을 1인으로 한함
(단, 각 분야별 선발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, 연수큰재(다년간) 분야는 미달되는 경우에도 1인으로 한함)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 다만 특기분야의 입상 실적 증빙을 위하여 제출한 원본은 확인 후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반환함.
-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두절로 불이익이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
- 제출서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,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조치
-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거부로 인한 장학생 미선발 등 불이익이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
- 신청인원 미달 시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
-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충족하더라도 경쟁률 · 심사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
② 분야별 유의사항

① 복지 장학생
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학업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- 추천권자: 학교장
[단,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중증장애인 가정의 자녀일 경우 동장, 정부기관 산하 청소년 및 사회복지 기관장, 기초자치단체장 가능]

② 특기(예능·체육·기능) _ 개인 장학생

-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불분명한 실적에 대하여는 대회규모 및 성격을 검토하여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
- 입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원본)는 최대 3개로 정하며, 우편 제출할 경우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. 제출된 원본은 확인 후 사본을 장학재단에서 보관하고, 원본은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반환함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특기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- 추천권자: 학교장

③ 특기(예능·체육·기능) _ 단체 장학생

-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불분명한 실적에 대하여는 대회규모 및 성격을 검토하여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특기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- 추천권자: 학교장 및 소속 단체(시설)장

④ 연수꿈응원 장학생
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학업 및 특기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- 추천권자: 학교장(반드시 학교 공문으로 신청 제출 요망)

⑤ 학업우수 장학생

- (타 장학금 중복수혜 한도) 2026년 2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반환하여야 함
 - ※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 가능
- (학자금 대출) 2026년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에 대해 대출금을 우선 상환

- 4.3점 만점 성적은 소속 대학에서 공식 발급한 4.5점 환산 성적을 적용하며, 공식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이 정한 환산기준에 따름
- (재)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급받은 장학금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중복수혜여부 확인 자료로 제공됨
 ※ 재단은 중복수혜자가 등록금 초과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향후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- 추천권자: 학교장 (추천서 학과장 이상 직인 날인, 교수 개인도장 불인정)

⑥ 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 [붙임자료 참조]

[고등학생 3학년]
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학업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- 추천권자: 학교장(반드시 학교 공문으로 신청 제출 요망)

[대학생]

- (타 장학금 중복수혜 한도) 2026년 2학기에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중복 지원이 확인되는 경우,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반환하여야 함
 ※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 가능
 ※ 단,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, 생활비성 장학금 50만원 추가 지원(생활비성 장학금)
- (학자금 대출) 2026년 2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에 대해 대출금을 우선 상환
- (재)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급받은 장학금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중복수혜여부 확인 자료로 제공됨
 ※ 재단은 중복수혜자가 등록금 초과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향후 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- 4.3점 만점 성적은 소속 대학에서 공식 발급한 4.5점 환산 성적을 적용하며, 공식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이 정한 환산기준에 따름

⑦ 설립 10주년 특별 장학생

- 생활비성 장학금(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 가능)으로 지급, 학업 향상을 위한 비용(학원수강, 교재비 등)으로 사용

- 2026년에 한하여 선발하며, 다자녀가정 자녀, 특수학교 모범 재학생, 순직군경·순직공무원의 자녀 및 자립준비청년·보호연장아동 중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

※ 중·고등학생 평균 성취도 산출방법

- ▶ 성취도가 산출된 전 과목을 대상으로 A=5점, B=4점, C=3점, D=2점, E=1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함
- ▶ 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, 평균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함
- ▶ 환산 평균점수가 4.00점 이상인 경우 평균 성취도 B등급 이상으로 인정함
- ▶ 지원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유형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환산 평균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음

- 특정 자격유형에 지원자가 집중된 경우에는 자격유형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학업 성적, 자녀 수, 사회기여도, 추천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심의회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함
-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충족하더라도 경쟁률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- 추천권자

선발분야	추천권자	비고
다자녀가정 자녀	학교장	
특수학교 모범 재학생	재학중인 특수학교장	특수학교 공문으로만 신청
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의 자녀	학교장, 기초자치단체장, 동장, 해당 자격 또는 생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훈.사회복지 관련 기관장	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	학교장, 기초자치단체장, 동장, 아동복지시설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또는 정부, 지자체 산하 청소년.사회복지기관장	

※ 대학생은 추천서 학과장 이상 직인 날인, 교수 개인도장 불인정

③ 장학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

- 학교로부터 징계(정학, 제적 등) 처분을 받았을 때
- 장학금 지급일 현재 공통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
- 장학생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
- 학생으로서 현저하게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
- 그 밖의 사유 때문에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가 취소 결정한 때

[붙임자료] 1. 연수큰재(다년간) 장학생 선발 관련 안내 사항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각 1부. 끝.

□ 선발개요

- 1) 지원대상: 고등학교 3학년
- 2) 추천권자: 소속 학교장 추천에 한함
- 3) 선발인원: 3명(접수 인원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)
- 4) 지급금액: **1인 최대 1,700만원 지급**(대학 졸업까지 지급기준 요건 충족 시)
 - (고등학생) 100만원
 - (대 학 생) 대학 진학 후 지원요건 충족 시 연 최대 400만원

□ 신청자격(1~4의 자격 모두 충족자)

- 1)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또는 부·모(또는 보호자)의 자녀
- 2)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26. 9월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전체 상위 10% 범위 이내에 있는 자
(백분위가 표시되는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이 90% 이상인 자)
- 3) 연수큰재장학재단 및 연수구가 주관하는 멘토링, 봉사활동 및 장학생 교류활동 등에 분기별 1회 이상 성실히 참여할 의지가 있는 학생
- 4) 2027년도 1학기에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계속하려는 자
 - 대학 입학(등록) 후 1개월 이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2027학년도 1학기 대학 미진학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기지급 장학금을 환수함

□ 선발절차 및 방법

- 1) 선발절차
 - 접수(**학교 공문 접수 必**) ⇨ 서류심사 ⇨ 면접심사 ⇨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선발심의 ⇨ 장학생 최종확정
- 2) 선발방법
 - 서류심사: **3배수 이내 선발**
 - ▶ 선발기준 :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고득점 순
 - ▶ 3배수 이내 지원 접수 시, 지원자격 적합 유무만 판단
 - ▶ 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심사 합격 처리

- 면접심사: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심사
- 최종선발: 선발 심의위원회 및 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한 최종선발

□ 지급내용: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최대 4학년까지 지속적 장학금 지급

- 1) 고등학생 3학년: 100만원 지급
- 2) 대학생: 연 최대 400만원 지급, 대학교 졸업까지(정규학기만 해당)
최대 1,600만원까지 지급

※ 타 장학금 중복 지원 불가[단,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, 생활비성 장학금 50만원 추가 지원(생활비성 장학금)]

- ▶ (타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한도) 지급학기 타 장학금을 수혜하여 중복 지원이 확인 되는 경우,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은 반환하여야 함
 - ※ 2개 이상의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 내라면 중복 수혜 가능
- ▶ (학자금 대출)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장학금액에 대해 대출금을 우선 상환
- ▶ (재)연수큰재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급받은 장학금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중복수혜여부 확인 자료로 제공됨
 - ※ 중복수혜자가 등록금 초과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해소하지 않을 시 계속 지원 중단.

□ 유의사항

- 1) 타 선발분야와 중복 신청 불가
- 2)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재단의 2기 봉사단에 3년간 의무가입 되며,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(장학증서 수여식, 워크숍, 봉사단 등)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- 3) 한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 시, 선발 평가 대상을 1인으로 한함
- 4)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, 연락두절로 불이익이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
- 5) 제출서류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,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조치
- 6)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거부로 인한 장학생 미선발 등 불이익이 발생 시 신청자의 책임
- 7) 신청인원 미달 시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
- 8) 이외 공고문 ‘장학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’ 준용

□ 계속지원 장학생(대학생) 지급조건

1) 자격요건

-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장학생 또는 부모(보호자)가 연수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성적 : 2026년 1학기 4.5점 만점 기준 3.5점 이상(4.3점 만점일 경우, 환산 점수 적용)

2) 유의사항

- 학적변동사항(졸업, 복학, 편입, 자퇴, 재입학 등) 있을 시 재단에 변동일 기준 14일 이내 별도 통보(기한 내 통보 원칙으로 미 통보 시 지원 중단 할 수 있음)
- 계속 지원 중단 사유

- ▶ 상기 '1) 자격요건'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
- ▶ 장학생 선발 이후 질병 또는 군복무 외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계속 지원 자격을 상실하며, 이후 복학하더라도 장학금 지원을 재개하지 않음 (단, 질병이나 군 복무에 의한 휴학은 관련 서류 징구 후 자격 유지 및 장학금 지급 결정)
- ▶ 학교로부터 징계(정학, 제적 등) 처분 등 학생으로서 현저하게 어긋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
- ▶ 장학금 지급일 현재 공통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
- ▶ 장학생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
- ▶ 장학금 중복수혜자가 등록금 초과금액을 반환할 때까지 반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이를 1개월 내 해소하지 않았을 때
- ▶ 그 밖의 사유 때문에 학교장 등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가 취소 결정한 때

□ 제출서류

1) 고등학생 3학년

연 번	제 출 서 류	발 급 처
1	[별지 제1호 서식] 장학생 신청서	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://www.yeonsu.go.kr/main/ 또는,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://ysjaedan.imweb.me 다운로드 후 작성
2	[별지 제1-2호 서식] 연수큰재 장학생 자기계발 계획서	
3	[별지 제2호 서식] 장학생 추천서 ※ 추천권자 : 학교장	
4	[별지 제2-1호 서식] 성적증명서 확인 (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 사본 및 해당 성적 산출내역 포함 제출)	
5	[별지 제4호 서식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화·초상권 사용 동의서	
6	재학증명서	소속학교
7	주민등록초본 1통(최근 2년 이상 주소변동사항) ※ 신청 대상자가 연수구 미거주시 연수구 거주 부 또는 모(보호자)의 주민등록초본 제출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정부24
8	가족관계증명서(부모 기준) 1부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2) 대학생

연 번	제 출 서 류	발 급 처
1	[별지 제3호 서식] 타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서 ※ 소속 학교에서 발급 가능 시, 대체 가능	연수구청 홈페이지 https://www.yeonsu.go.kr/main/ 또는, 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://ysjaedan.imweb.me 다운로드 후 작성
2	[별지 제4호 서식]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화·초상권 사용 동의서	
3	성적증명서	소속학교 등
4	재학증명서 ※ 질병·군복무로 인한 휴학중인 경우 휴학증명서 및 해당 사유 증빙서류	
5	주민등록초본 1통(최근 2년 이상 주소변동사항) ※ 신청 대상자가 연수구 미거주시 연수구 거주 부 또는 모(보호자)의 주민등록초본 제출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정부24
6	가족관계증명서 1부 ※ 장학생 본인이 연수구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(보호자)의 거주요건을 적용 받는 경우에만 제출하며, 그 외에는 제출하지 않음	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, 정부24